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2779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가. C과 선정자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4,590,611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7,355,107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선정자 D은 원고에게 11,945,7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C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1,091,92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1,091,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E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과 선정자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은 4,590,611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은 7,355,107원의 한도 내에서, C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5. 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은 11,091,924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1,945,718원, 피고(선정당사자)는 11,091,9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와 피고(선정당사자)는 C의 자 및 남편으로 보험계약 명의를 C에서 변경받고 원고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을 뿐 달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정자와 피고(선정당사자)는 계약 명의 변경 당시 이미 그러한 지위를 받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아직 해약 등을 통하여 계약 명의 변경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 상당을 수령하는 등 그 이익을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별지